

[별표 1] <개정 2012.2.28>

미가공식료품분류표(제10조제1항관련)

구분	관세율표번호	품명
1. 곡류	1001	①밀과 메슬린
	1002	②호밀
	1003	③보리
	1004	④귀리
	1005	⑤옥수수
	1006	⑥쌀(벼를 포함한다)
	1007	⑦수수
	1008	⑧메밀·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
	1101	⑨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
	1102	⑩곡분(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)
	1103	⑪곡물의 분쇄물·조분 및 펠리트
	1104	⑫기타 가공한 곡물(예 : 껍질을 벗긴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상의 것, 진주상의 것,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빵은 것) (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)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
	1106	⑬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(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)의 분과 조분
2. 서류	0714	①매니옥, 칩뿌리·살렘·국아·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·괴경(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) 및 사고야자의 수
	1106	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·뿌리 또는 괴경(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)의 분과 조분
	0701	③감자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1105	④감자의 분·조분·분말·플레이크·입 및 펠리트
3. 특용작물류	0901	①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(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한다) 및 커피두의 각·피와 웨이스트
	0902	②차류(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)
	0904	③후추(과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) 및 고추류

4. 과실류

	(건조, 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)
1201	④대두(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
1202	⑤낙화생(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,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
1206	⑥내지 ⑧<삭제> ⑨해바라기씨(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
1207	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(팜넛과 핵·면실·피마자·잇꽃씨·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
1208	⑪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(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)
1212	⑫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(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
1211	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
1801	⑭코코아두(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)
1802	⑮코코아두의 각·피와 웨이스트
2401	⑯잎담배 및 담배부산물
0910	⑰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
0801	①코코넛·브라질넛 및 캐슈넛(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,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)
0802	②기타의 견과류(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,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)
0803	③바나나(플랜틴을 포함하며,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)
0804	④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·구아버·망고 및 망고스틴(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
0805	⑤감귤류의 과실(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)
0806	⑥포도(신선한 것에 한한다)
0807	⑦멜론(수박을 포함한다)과 포포우(파파야)(신선한 것에 한한다)
0808	⑧사과·배 및 마르멜로(신선한 것에 한한다)
0809	⑨살구·버찌·복숭아(넥터린을 포함한다)·자두 및

5. 채소류	0810	슬로우(신선한 것에 한한다)
	0811	⑩기타 과실(신선한 것에 한한다)
	0812	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(물에 삶거나 찢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)
	0813	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(이산화유황 가스·염수·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
	0702	⑬건조한 과실(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
	0703	①토마토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0704	②양파·쪽파·마늘·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(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
	0705	③양배추·꽃양배추·구경양배추·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0706	④상치(락투카 사티바) 및 치커리(시커리엄종)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0707	⑤당근·순무·샐러드용 사탕무뿌리·선모(仙茅)·셀러리악·무·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0708	⑥오이류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0709	⑦채두류(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0710	⑧기타의 채소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	0711	⑨냉동채소(조리한 것을 제외한다)
	0712	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(이산화 유황가스·염수·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
	0713	⑪건조한 채소(원상의 것, 절단한 것, 얇게 썬 것,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)
	0101	⑫건조한 채두류(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
	0101	①말(경주말·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)·당나귀·노새와 버새

7. 수육류

0102	②소(물소를 포함한다)
0103	③돼지
0104	④면양과 산양
0105	⑤가금류(닭·오리·거위·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)
0106	⑥기타의 산 동물(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)
0201	①쇠고기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
0202	②쇠고기(냉동한 것에 한한다)
0203	③돼지고기(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
0204	④면양과 산양의 고기(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
0205	⑤말·당나귀·노새와 버새의 고기(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
0206	⑥식용설육(소·돼지·면양·산양·말·당나귀·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
0207	⑦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(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
0208	⑧기타의 육과 식용설육(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
0209	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(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·냉장·냉동·염장·염수장·건조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)
0210	⑩육과 식용설육(염장·염수장·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)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
0504	⑪동물(어류를 제외한다)의 장·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(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)
0511	⑫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·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(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)
0506	⑬쌀과 혼코어[가공하지 아니한 것, 탈지한 것, 단순히 정리한 것(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),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]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

8. 유란류	0401	①밀크(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·건조·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)
	0402	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·연유와 분유
	0407	③조란(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)
	0408	④조란(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)과 난황(신선한 것과 건조,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)
	1901	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.
	3502	⑥난백(신선한 것과 건조,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)
9. 생선류	0301	①활어(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)
	0302	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(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)
	0303	③냉동어류(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)
	0304	④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(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
	0305	⑤건조·염장·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(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와 어류의 분·조분 및 펠리트(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)
	0306	⑥갑각류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산 것과 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,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)
	0307	⑦연체동물[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, 산 것과 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, 연체동물의 분·조분과 펠리트(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)를 포함한다]

10. 패류	0308	⑧수생무척추동물[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, 산 것과 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, 수생무척추동물(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)의 분·조분과 펠리트(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)를 포함한다]
	0511	⑨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트(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)
	0307	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·바지락·백합·홍합·전복과 기타의 패류(산 것과 신선·냉장·냉동·염장·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)
11. 해조류	1212	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·미역·툇·파래·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(신선한 것과 냉장·냉동·염장·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)
12.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	0409	①천연꿀
	0410	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
	1212	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(산채류를 포함한다)
	2501	④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데친 채소류·김치·단무지·장아찌·젓갈류·게장·두부·메주·간장·된장·고추장(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,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·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	1209	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⑦쌀에 인산추출물·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·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(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),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